	규정	문서번호	TWP-A402	
		제정일자	1998. 03. 01.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교수 연구물의 기준
- 제3장 심사와 기준
- 제4장 교수 연구 논문집 발간
- 제5장 교수연수활동

부칙
별표

작성부서	교무학생처	제정일자	1998. 03.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교무학생처장	산학입학처장	사무처장	부총장	총 장
직 책	담 당					
서 명						
일 자						




규정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

문서번호	TWP-A402
제정일자	1998. 03. 01.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2/7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1	2009. 01. 30.	- 4차 개정
2	2012. 07. 27.	- 대학 → 대학교 문구 정리
3	2012. 08. 24.	-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전임강사→조교수로 명칭 변경
4	2024. 12. 11.	- 교무학생처장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위원장과 전공분야별 위원 2인으로 변경

	규정	문서번호	TWP-A402	
		제정일자	1998. 03. 01.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수의 학술 및 기술연구 장려와 그 결과에 대해 심사하고 교수의 연구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7>

제2조(발표 자격) 이 대학교의 교수 연구 논문집에 발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7.27>

1.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과 공동 연구자<개정 2012.7.27>
2. 이 대학교의 외래교수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개정 2012.7.27>
3. 기타 이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발표 대상자<개정 2012.7.27>

제3조(연구물의 제출과 기간) ① 이 대학교의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부족논문 100%는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27>


- ② 전임교원은 현 직급 임용기간 중 100%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당해연도 게재논문은 연구실적물 심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소정의 심사를 마친 교수 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법정기일내에 교육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외 인정) 전문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한 (별표:1)의 경력자를 신규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실적물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교수 연구물의 기준

제5조(연구물의 범위) ① 연구 논문은 교수의 전공분야 또는 학사에 관한 것으로서 논문에 필요한 형식조건과 그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②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과학 분야는 예외로 한다.
- ③ 연구논문 내지 그 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은 인정하되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출판된 저서
 2. 학회지

	규정	문서번호	TWP-A402
		제정일자	1998. 03. 01.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3. 타 기관 연구논문집의 수록 논문
4. 학술적인 전문기관 정기 간행물
5. 예능계의 경우에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의 작품
6. 석·박사 학위취득 논문 등

제6조(연구실적물의 인정) 연구실적물의 심사에 필요한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용 미 출판 저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육부 검인정 교과서 및 저자의 독창적인 이론과 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2. 예·체능계 분야는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 등 (별표:2)와 같이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심사와 기준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교수논문 및 연구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수연구(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24.12.11.>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전공 분야별로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교수 또는 관련 산업체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11.>
-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반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연구물의 심사 및 평정
2. 심사 대상 연구물의 공개 토론 및 의견 개선
3. 타 대학 전공 교수 및 산업체 관련 전문가 위촉 추천
4. 외부 전문기관에의 자문
5. 교수 연구 논문집의 편집, 발간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피심사자를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질의 등 연구세미나와 토론회를

	규정	문서번호	TWP-A402	
		제정일자	1998. 03. 01.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평정) 교수연구논문의 심사 평정은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하며, 심사위원 전원 ‘우’ 이상의 평정 연구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예·체능계분야의 평정대상은 (별표:2)에 의하되, 1년에 1점으로 국한한다.

1. 법정 의무 교수연구물의 인정
2. 이 대학교의 ‘교수연구논총’(집)에의 게재

제11조(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 제출된 교수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 연구 또는 편찬 : 30%
5. 석사학위 취득 논문 : 100%
6. 박사학위 취득 논문 : 200%


제4장 교수 연구 논문집 발간

제12조(게재의 대상) 이 대학교의 교수연구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우’ 이상의 평정을 받은 논문에 한한다. 다만 외부에 발표가 되었거나 보고 제출된 경우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7.27>

제13조(편집 및 발간) 교수연구논문집의 발간에 필요한 편집과 발간에 관한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1. 논문집 발간 방침 및 계획 수립
2. 논문집 게재 대상 채택
3. 편집 목차의 결정
4. 발행 부수 및 배부처
5.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소요예산) 교수연구물 심사 및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따로 정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402
		제정일자	1998. 03. 01.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제5장 교수연수활동

제15조(연수의무) ① 이 대학교의 교수 자질 향상과 산학연계를 위하여 현직급 임용기간 중 1주일 이상의 전공과 관련되는 산업체 현장 연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7.27>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연수대상 기관) 교수가 연수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자체 연수와 박사학위 과정은 제외한다.

1. 산학협동 및 자매결연 유관업체
2. 학생 현장실습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이상의 업체
4. 교육부, 관련 학회 및 각종 협회의 주관, 후원기관의 연수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

제17조(결과보고와 처리) ① 연수 및 동 교육훈련에 참여한 교수는 교학처를 경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교수의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402
			제정일자	1998. 03. 01.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		개정일자	2024. 12. 11.
			개정번호	4
		페이지	7/7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실적물의 예외인정

경 력 사 항	임용직급	연구실적물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대학, 수산대학 졸업자로 3급 항해사 (상선 및 어선항해사 포함), 3급 기관사 이상 또는 1급 선박통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상선의 원양구역 승무경력 또는 200톤 이상의 어선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 경우 승선 후 휴가기간이 휴가 전에 소속되었던 기관(회사)과 동일한 경우 휴가기간을 승선기간으로 본다) ·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임용일 기준,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p>조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수는 최근 3년 이내의 논문 1편(100%) 이상 ·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 이수중인 자로서 동 과정의 1년 이상을 이수하고 그 성적평점이 2/3이상이며 한국과학기술원장이 추천하는 자 	<p>조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원장의 평점 및 추천을 연구실적 1편(100%)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문대학)에서 총장, 부총장,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 · 대학(전문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2년 이내 신규 임용하는 경우 	<p>조교수 이상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가능

[별표 2]

예 · 체능계 및 창작실기계 연구업적 평가표

분 야 별	연 구 업 적	평 점
1. 미 술	1. 국제전 가. 특선 1회 나. 입선 2회 다. 교수자격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국제전 입선 1회 2. 공인된 개인전 2회 3. 공인된 단체전 가. 특선 2회 나. 입선 4점 4. 추천작가 이상 자격자로 공인된 단체전 출품 2회 5. 국제전 심사위원 1회 6. 국전 및 상공전 심사위원 2회 7. 미술관계 훈장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2. 체육분야	1.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1회 2. 올림픽경기 출전 3. 전국대회 입상 2회 4.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5. 체육관 훈장 1회 6.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수회 강사 50시간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1 점
3. 창작실기활동	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2.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3. 관계 분야에 관한 훈장	1 점 1 점 1 점